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752-20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6.19.(금)	'26.07.29.(수)	'26.08.03.(월)	'26.08.06.(목)	'26.08.07.(금)	'26.08.08.(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29.(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9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9.(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7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8.03.(월)	26.08.06.(목)	26.08.07.(금)	26.08.08.(토)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17)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일원 A2-1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6층, 지상 59층 9개동 총 1,712세대 중 잔여 486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910199	01	084.8315A	84A	84.8315	29.0685	113.9000	58.2363	172.1363	20.1188	71
	02	084.9186B	84B	84.9186	28.2912	113.2098	58.2961	171.5059	20.1394	25
	03	115.5495A	115A	115.5495	37.1157	152.6652	79.3241	231.9893	27.4039	232
	04	115.5735B	115B	115.5735	37.9751	153.5486	79.3405	232.8891	27.4096	122
	05	152.3629B	152B	152.3629	46.0789	198.4418	104.5962	303.0380	36.1346	36
	합 계									486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동-라인	층구분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 체결시	계약 후 30일 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7.03.18	2028.02.18	2028.12.18	2029.09.18	2030.02.18	2030.07.18	
84A	105동 4호	2~5	13	270,980,010	379,319,990	-	650,300,000	10,000,000	55,030,000	65,030,000	65,030,000	65,030,000	65,030,000	65,030,000	65,030,000	195,090,000
	106동 4호 107동 4호	6~9	12	273,813,570	383,286,430	-	657,100,000	10,000,000	5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65,710,000	197,130,000

	108동 4호 109동 4호	10~19	24	279,480,690	391,219,310	-	670,700,000	10,000,000	57,070,000	67,070,000	67,070,000	67,070,000	67,070,000	67,070,000	67,070,000	201,210,000
		21~35	15	282,272,580	395,127,420	-	677,400,000	10,000,000	5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203,220,000
		36이상	7	287,939,700	403,060,300	-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84B	106동 3호 107동 3호 108동 3호 109동 3호	2~5	12	274,230,270	383,869,730	-	658,100,000	10,000,000	5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197,430,000
		6~9	7	277,105,500	387,894,500	-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10~19	5	282,814,290	395,885,710	-	678,700,000	10,000,000	5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203,610,000
		36이상	1	291,398,310	407,901,690	-	699,300,000	10,000,000	5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69,930,000	209,790,000
115A	105동 2호 106동 2호 107동 2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2~5	25	328,778,870	460,291,940	46,029,190	835,100,000	20,000,000	6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250,530,000
		6~9	24	332,204,060	465,087,220	46,508,720	843,800,000	20,000,000	6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84,380,000	253,140,000
		10~19	58	339,054,440	474,677,780	47,467,780	861,200,000	20,000,000	66,120,000	86,120,000	86,120,000	86,120,000	86,120,000	86,120,000	86,120,000	258,360,000
		21~35	71	342,479,630	479,473,060	47,947,310	869,900,000	20,000,000	6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86,990,000	260,970,000
		36이상	54	349,330,010	489,063,630	48,906,360	887,300,000	20,000,000	6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88,730,000	266,190,000
115B	105동 1호 106동 1호 107동 1호	2~5	11	336,889,090	471,646,280	47,164,630	855,700,000	20,000,000	65,570,000	85,570,000	85,570,000	85,570,000	85,570,000	85,570,000	85,570,000	256,710,000
		6~9	11	340,393,020	476,551,800	47,655,180	864,600,000	20,000,000	66,460,000	86,460,000	86,460,000	86,460,000	86,460,000	86,460,000	86,460,000	259,380,000
		10~19	30	347,400,880	486,362,840	48,636,280	882,400,000	20,000,000	6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88,240,000	264,720,000
		21~35	39	350,904,810	491,268,350	49,126,840	891,300,000	20,000,000	69,130,000	89,130,000	89,130,000	89,130,000	89,130,000	89,130,000	89,130,000	267,390,000
		36이상	31	354,093,780	495,732,930	49,573,290	899,400,000	20,000,000	6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269,820,000
152B	104동 1호	2~9	8	519,447,780	727,229,290	72,722,930	1,319,400,000	30,000,000	101,940,000	131,940,000	131,940,000	131,940,000	131,940,000	131,940,000	131,940,000	395,820,000
		10~20	9	524,762,730	734,670,250	73,467,020	1,332,900,000	30,000,000	103,290,000	133,290,000	133,290,000	133,290,000	133,290,000	133,290,000	133,290,000	399,870,000
		21~35	10	530,077,680	742,111,200	74,211,120	1,346,400,000	30,000,000	10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134,640,000	403,920,000
		36이상	9	535,353,260	749,497,040	74,949,700	1,359,800,000	30,000,000	10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135,980,000	407,940,000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06.(목) ~ 2026.08.15(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0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해외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자격검증 서류제출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발급용"에 한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임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8.08.(토)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 분양계약자 부담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청약자)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수납계좌	수협은행	1010-2781-094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재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제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8.09.(일)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8.09.(일)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진행방식은 별도 고지 예정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84A	84B	115A	115B	152B
발코니 확장 공사비		28,800,000	28,800,000	37,100,000	32,700,000	42,600,000
납부 방법	계약금(계약시)	2,880,000	2,880,000	3,710,000	3,270,000	4,260,000
	잔 금(입주시)	25,920,000	25,920,000	33,390,000	29,430,000	38,340,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781-113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 셔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건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시공 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확장하지 아니한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희통이 별도 설치되지 않음.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비확장세대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바닥 배수구 등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시 각종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확장시 제공되는 무상옵션 항목들을 제공 및 시공 받을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 선택 품목

■ 가전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위치	구분	마감기준			약식표기		
		제조사/모델명	기본	옵션	84A, 84B	115A, 115B	152B
각실	시스템 에어컨	LG (일반형)	선택1	3EA(거실+주방+안방)	5,120,000	5,140,000	5,810,000
				5EA(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800,000		
				6EA(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320,000	8,990,000
		LG (프리미엄 공기청정형)	선택1	3EA(거실+주방+안방)	6,010,000	6,030,000	6,670,000
				5EA(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6EA(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0,650,000	11,300,000

■ 공간옵션

1) 알파룸 수납강화형(팬트리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위치	구분	마감기준		약식표기
		기본	옵션	115B
침실1	수납강화형(팬트리 옵션)	미설치	와이드다이닝+팬트리1+팬트리2	9,870,000

■ 마감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위치	구분	마감기준		약식표기				
		기본	옵션	84A	84B	115A	115B	152B
거실/주방	바닥고급화	강마루	유럽산바닥타일 (600*600)	2,620,000	2,660,000	3,500,000	2,910,000	4,970,000

■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국민은행	086801-01-013053	아이에스동서(주)

- 상기 추가선택품목 중 발코니 비확장시 선택이 불가한 품목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비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 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일정, 납부 일정(계약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 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 일정, 납부방법, 선택 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옵션 가전 선택 시공 시 기본 가전제품 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옵션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여부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임. 따라서,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 체결(전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

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행수탁자 및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및 냉매배관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 실별·위치별 선택이 불가하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내기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 품질·품귀, 단종,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설계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건본주택 설치제품 또는 기 선정된 제조사·모델과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천장 배관 및 등기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벽걸이형 등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거실 및 안방에는 냉매 골조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상기 사항 외 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시공상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사	시공업체
상호명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50, A동 12, 13, 14층 (덕은동, 덕은DMC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50, A동 12, 13, 14층 (덕은동, 덕은DMC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
법인등록번호	110111-0208383	110111-0208383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pentahillsw.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37-17

■ 분양 문의 : 053-752-2000